

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10조제1항 관련)

구분	교육대상		교육시간 (교육시기)	교육내용
1. 신규 교육 · 훈련	근로자	가.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 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 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 •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 항 • 연구실사고 사례,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
		나. 영 제11조제2항 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 규로 채용된 연구 활동종사자	4시간 이상 (채용 후 6 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 항 • 연구실사고 사례,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•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
	근로자 가 아닌 사람	다. 대학생, 대학원 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 동종사자	2시간 이상 (연구활동 참여 후 3 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
2. 정기 교육 · 훈련	가.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	연간 3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
	나.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	반기별 6시 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
	다.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	반기별 3시 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

3. 특별안전 교육 · 훈 련	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 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 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 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	--

비고

1. 제1호에서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2.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 ·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(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)의 정기 교육 ·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3.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 · 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 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